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54
------------	-------

발의연월일 : 2018. 12. 28.

발 의 자 : 최도자 · 김종회 · 조배숙

황주홍 · 주승용 · 이동섭

이찬열 · 김관영 · 임재훈

이용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 · 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④ (생 략)</p> <p>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止를 명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4. (현행과 같음)</p> <p><u>5.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疾止를 명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④ (생 략)</p>	<p><u>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u></p> <p>② ----- ----- ----- ----- ----- -----. 1. ~ 4. (현행과 같음)</p> <p><u>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